

1. 개정이유

항만의 개발과 선박 통항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교통안전 특정해역의 지정속력 및 항법을 개선하는 한편, 「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가 도입('24.1.5.)됨에 따라 해사안전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진단대행업자 기술인력 자격기준에 선박안전관리사 자격도 인정하고, 안전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 관련 교육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산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 최고속력 현실화(안 별표 3)

부산항을 출입하는 여객선의 운항환경 등을 고려, 부산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 내 최고속력(10노트)을 여객선 특성에 따라 일부 상향 조정하고자 함

나. 여수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 항법 개선(안 별표 4)

여수 교통안전특정해역 내 홀수제약선만 항해토록 규정한 “깊은수심항로”를 부득이한 경우 다른 입항선박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안전진단대행업자 기술인력 자격기준 확대(안 별표 9)

기존 해기경력만 요구되는 안전진단대행업자 기술인력 자격기준에 동등한 수준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인정하고자 함

라. 안전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 교육제도 정비(안 별표 13)

안전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 의무 교육에 대해 현장의견 등을 고려하여
교육시기 및 유효기간 등을 개선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2호 단서 중 “갱신인증심사”를 “중간인증심사”로 한다.

별표 3 부산항 출입항로 중 “10노트”를 “10노트(쾌속여객선은 18노트, 카페리여객선은 출항 시 14노트, 입항 시 12노트)”로 한다.

별표 3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쾌속여객선”이란 여객 전용 여객선으로서 최고속력이 25노트 이상으로 항행하는 고속여객선을 말한다.
2. “카페리여객선”이란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 따른 카페리여객선을 말한다.
3. 부산항 출입항로에서 제한된 시계상태에서 항행할 때에는 모든 선박은 10노트 이하로 항행해야 한다.

별표 4 광양항 출입항로 항법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흘수제약선은 깊은수심항로가 설정된 수역에서는 그 항로를 따라 항행해야 하고, 항로 안에서 다른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깊은수심항로의 오른쪽으로 항행해야 한다.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비고 “4, 5”를 “5, 6”으로 한다.

4. 흘수제약을 받지 않는 선박은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경우, 급박한 위

험을 피하기 위한 경우 또는 부득이 입항항로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깊은수심항로를 항해할 수 있다. 다만, 깊은수심항로를 항행하는 선박은 흘수제약선의 통항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5. 제1호에 따라 항로지정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선박이 서로 충돌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흘수제약을 받지 않는 선박이 흘수제약선의 진로를 피해야 한다.

6. 주의해역에서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최상의 조종 준비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통상적인 통항흐름에 따라 항행해야 한다.

별표 8 항만 또는 부두의 개발·재개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 및 여객선이 이용하는 계류시설의 건설 또는 변경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

별표 9 제2호가목 선임자급 인력 중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자격: 3급 항해사 이상의 해기사 면허 또는 2급 이상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하거나 안전진단서 검토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9 제2호가목 보조자급 인력 중 1)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3급 항해사 이상의 해기사 면허 또는 2급 이상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했을 것

별표 11 제1호다목 중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별표 12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

추고 별표 13에서 정하는 교육을 받은 육상직원으로서 최고경영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 중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별표 12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고 별표 13에서 정하는 교육을 받은 육상직원으로서 최고경영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별표 13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신규교육	정기교육
교육시기	선임되기 전	3년마다

별표 13 제1호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규교육은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정기교육은 종전에 받은 신규 또는 정기 교육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받아야 하며, 정기교육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3. 종전에 받은 신규 또는 정기교육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정기교육을 받은 경우, 정기교육의 유효기간은 종전에 받은 신규 또는 정기교육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4. 종전에 받은 신규 또는 정기교육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이 되는 날 전에 정기교육을 받은 경우, 정기교육의 유효기간은 해당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5.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자가 신규 또는 정기교육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정기교육을 받은 경우, 정기교육의 유효기간은 종전에 받은 신규 또는 정기교육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별표 13 제2호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내항선의 사업장 소속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가 외항선의 사업장 소속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별표 13 제3호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별표 13 제4호가목 중 “최근 2년 이내에 신규교육이나 정기교육을 받은”을 “종전에 받은 신규 또는 정기 교육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으로 한다.

별지 제13호 서식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대상 구분	[] 외항선의 사업장 소속 [] 안전관리책임자	[] 내항선의 사업장 소속 [] 안전관리자
첨부서류	1.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사본 2. 근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3. 「해상교통안전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	
		수수료 없음

별지 제19호 서식 중 2쪽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간인증심사의 확인
Endorsement for Intermediate Verification AND
Additional Verification(If required)

이 증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그 요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the periodical verification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6.1 of Chapter IX of the Convention and paragraph 13.8 of the ISM Code,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ISM Code.

중간인증 심사
(Intermediate Verification)

장소(place): _____

날짜(date): _____

인증심사원: _____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f authorized official)

지방해양수산청장(정부대행기관의 장)
Director General of ()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직인

별지 제20호 서식 중 2쪽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간인증심사의 확인

Endorsement for Annual Verification

이 증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그 요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the periodical verification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6.1 of Chapter IX of the Convention and paragraph 13.4 of the ISM Code,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ISM Code.

제1차 중간인증심사
(1st Annual Verification)

장소(place): _____

날짜(date): _____

인증심사원: _____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f authorized official)

지방해양수산청장(정부대행기관의 장)
Director General of ()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직인

제2차 중간인증심사
(2nd Annual Verification)

장소(place): _____

날짜(date): _____

인증심사원: _____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f authorized official)

지방해양수산청장(정부대행기관의 장)
Director General of ()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직인

제3차 중간인증심사
(3rd Annual Verification)

장소(place): _____

날짜(date): _____

인증심사원: _____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f authorized official)

지방해양수산청장(정부대행기관의 장)
Director General of ()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직인

제4차 중간인증심사
(4th Annual Verification)

장소(place): _____

날짜(date): _____

인증심사원: _____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f authorized official)

지방해양수산청장(정부대행기관의 장)
Director General of ()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직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교육에 관한 특례) 해양수산부령 제578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23년 1월 11일 이후에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가 해양수산부령 제578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1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수한 신규 또는 정규 교육의 유효기간은 같은 표 제1호 비고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하고, 그 유효기간은 신규 또는 정규 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에서의 속력(제6조제1항제2호 본문 관련)

항로명	구간	속력 (대수속력을 말한다)
부산항 출입항로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구간 1. 북위 35도04분42초, 동경 129도07분10초(항계선) 2. 북위 35도04분25초, 동경 129도09분03초 3. 북위 35도02분53초, 동경 129도07분37초 4. 북위 35도04분12초, 동경 129도06분51초(항계선)	10노트 (쾌속여객선은 18노트, 카페리여객선은 출항 시 14노트, 입항 시 12노트)
광양항 출입항로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구간 1. 북위 34도45분11초, 동경 127도49분57초 2. 북위 34도45분11초, 동경 127도48분34초 3. 북위 34도50분23초, 동경 127도46분52초 4. 북위 34도50분53초, 동경 127도48분22초 5. 북위 34도46분13초, 동경 127도49분55초	14노트 (위험화물운반선은 12노트)

비고

1. ‘쾌속여객선’이란 여객 전용 여객선으로서 최고속력이 25노트 이상으로 항행하는 여객선을 말한다.
2. ‘카페리여객선’이란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 따른 카페리여객선을 말한다.
3. 부산항 출입항로에서 제한된 시계상태에서 항행할 때에는 모든 선박은 10노트 이하로 항행해야 한다.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에서의 항법(제6조제1항제3호 관련)

항로명	항법
인천항 출입항로	1. 선박이 인천항에 입항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인천항 출입항로의 입항항로(제1항로, 동수도항로)로 항행해야 하고, 출항할 때에는 출항항로(제2항로, 서수도항로)로 항행해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길이 30미터 미만의 선박 또는 범선은 입항항로 및 출항항로의 바깥해역을 이용하여 출항하거나 입항할 수 있으며, 덕적도 서북쪽 해역에서 인천항으로 항행하는 선박은 출항항로의 바깥해역을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출항항로의 바깥해역을 항행할 수 있으나 입항항로 또는 출항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3. 제2호에 따라 덕적도 서북쪽 해역에서 인천항으로 항행하려는 선박은 낮에는 제1대표기 밑에 엔(N)기를 게양해야 하며, 밤에는 음향신호, 발광신호 또는 무선전화 등을 이용하여 항로를 정상적으로 항행하고 있는 다른 선박이 해당 선박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산항 출입항로	1. 선박이 부산항에 입항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부산항 출입항로의 입항항로로 항행해야 하고, 출항할 때에는 출항항로로 항행해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 또는 범선은 부산항 출입항로의 바깥해역을 이용하여 입항하거나 출항할 수 있으나, 입항항로 또는 출항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광양만 출입항로	1. 선박이 별표 2에 따른 광양만 출입항로를 항행할 때에는 입항선박은 입항항로로 항행해야 하고, 출항선박은 출항항로로 항행해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 또는 범선은 광양만 출입항로의 바깥해역을 이용하여 입항하거나 출항할 수 있으나, 입항항로 또는 출항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3. 흘수제약선은 깊은수심항로가 설정된 수역에서는 그 항로를 따라

	항행해야 하고, 항로 안에서 다른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깊은수심항로의 오른쪽으로 항행해야 한다. 4. 흘수제약을 받지 않는 선박은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경우,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경우 또는 부득이 입항항로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깊은수심항로를 항해할 수 있다. 다만, 깊은수심항로를 항행하는 선박은 흘수제약선의 통항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5. 제1호에 따라 항로지정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선박이 서로 충돌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흘수제약을 받지 않는 선박이 흘수제약선의 진로를 피해야 한다. 6. 주의해역에서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최상의 조종 준비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통상적인 통항흐름에 따라 항행해야 한다.
--	---

비고: 위 표에서 정한 항법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75조에 따른 통항분리수역에서의 항법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75조제4항 및 제10항에 따른 선박에는 길이 30미터 미만의 선박을 포함한다.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안전진단서의 제출시기(제12조제3항 관련)

구분	안전진단서 제출시기
가. 항로 또는 정박지의 지정·고시 또는 변경	항로나 정박지의 지정·고시 또는 변경 전
나. 선박의 통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	1)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전, 변경의 경우에는 채굴계획 변경에 대한 인가 전 2)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전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 전,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지정 전 또는 골재채취 허가의 변경 승인 전
다. 수역에 설치되는 교량·터널·케이블 등 시설물의 건설·부설 또는 보수	1) 교량 또는 터널의 건설·보수의 경우에는 「도로법」 제25조 등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이에 해당하는 처분 전, 그 밖의 변경 또는 보수의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 등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결정 전 2) 해월케이블을 설치·부설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 그 밖의 공사 계획의 인가 전 3) 그 밖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또는 매립의 허가 신청 전, 협의 또는 승인 대상이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또는 매립의 허가·협의 또는 승인 전,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허가의 신청 또는 변경사항의 협의·승인 전
라. 항만 또는 부두의 개발·재개발	1) 무역항 또는 연안항을 신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항만법」 제8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고시 전 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고시 전 3) 「어촌·어항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어항의 지정·고시 전 4)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 및 여객선이 이용하는 계류시

	설의 건설 또는 변경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 「항만법」 제10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공고 전(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전) 나)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또는 승인을 받지 않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제28조 등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또는 매립의 허가 신청, 협의 또는 승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허가, 협의 또는 승인 전 다) 계류시설에 대한 증축·개축 없이 접안능력을 상향하려는 경우 시설능력의 변경 지정 전 5) 방파제·파제제 및 방조제의 건설 또는 변경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 「항만법」 제10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공고 전(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전) 나)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또는 승인을 받지 않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제28조 등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또는 매립의 허가 신청, 협의 또는 승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허가, 협의 또는 승인 전
마. 그 밖의 사업	최고 속력이 시속 60노트 이상인 선박을 투입하여 해상운송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운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전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 전

비고

1.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안전진단서의 제출시기는 가장 먼저 도래하는 시기로 한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협의·승인 등이 의제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의제처리되기 전까지 안전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9]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기준(제18조제1항 관련)

1. 등록요건

종류	기술인력	장비
1종 안전진단 대행업자	1) 책임자급: 1명 이상 2) 선임자급: 4명 이상 3) 보조자급: 3명 이상	1) 선박조종시뮬레이터: 1대. 다만, 2대 이상의 시각화시스템 및 선교시스템을 갖추어 2대 이상의 선박으로 실시간 통합 조종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2) 해상교통조사장비: 1조 이상
2종 안전진단 대행업자	1) 책임자급: 1명 이상 2) 선임자급: 2명 이상 3) 보조자급: 2명 이상	1) 선박조종시뮬레이터: 1대 2) 해상교통조사장비: 1조 이상

비고

1. 1종 안전진단대행업자 및 2종 안전진단대행업자의 업무 범위는 안전진단 대상사업의 규모 및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기술인력 중 책임자급 인력을 대체자격자로만 갖추어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 중 선임자급 인력의 과반수 이상은 기본자격자로 갖추어야 하며, 2종 안전진단대행업자로만 등록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라 2종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한 자가 해상교통안전진단 관련 업무를 3년간 수행하고 1종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종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변경등록할 수 있다.
4. 선박조종시뮬레이터 및 해상교통조사장비는 임대하는 경우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2. 기술인력 및 장비의 기준

가. 기술인력

구 분	자격요건
책임자급 인력	1) 기본자격: 2)에 따른 대체자격 또는 선임자급 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후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 또는 안전진단서 검토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대체자격: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해사안전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사안전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선임자급 인력	1) 기본자격: 3급 항해사 이상의 해기사 면허 또는 2급 이상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하거나 안전진단서 검토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체자격: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해사안전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하거나 안전진단서 검토업무 또는 해사안전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2)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해사안전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하거나 안전진단서 검토업무 또는 해사안전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2)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해사안전 관련 분야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하거나 안전진단서 검토업무 또는 해사안전 관련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2)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의 자격을 갖췄을 것 (2)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 된 후 안전진단서 검토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을 포함하여 해사안전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3)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보조자급 인력	1) 기본자격: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3급 항해사 이상의 해기사 면허 또는 2급 이상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했을 것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2) 대체자격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해사안전 관련 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했을 것 (2)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해사안전 관련 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하거나 안전진단서 검토업무 또는 해사안전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2)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해사안전 관련 분야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하거나 안전진단서 검토업무 또는 해사안전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2)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의 자격을 갖췄을 것 (2)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 된 후 안전진단서 검토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을 포함하여 해사안전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3)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비고	1) 상위급의 진단인력은 바로 아래 급 진단인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해사안전 관련 분야는 선박항해학, 선박운용학, 선박운항학, 해상교통공학, 조선해양공학, 해양물리학, 지리정보학, 전산학, 통계학, 안전공학,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공 분야를 말한다. 다만, 해양물리학, 지리정보학, 전산학, 통계학, 안전공학,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공 분야일 경우에는 이수학과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연구실적 및 논문 등을 참조할 수 있다. 3) 해사안전 관련 업무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해사안전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연구·강의한 것을 말한다. 4) 기술인력의 기준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장비

장비명	최소 구성 및 성능 요건
선박조종 시뮬레이터 (Real Time Full-Mission Shiphandling Simulator)	1) 통제시스템(Control System): 운항 시나리오 작성, 선박모델 개발, 3차원(3D) 지형지물개발 및 적용, 시뮬레이션 진행사항에 대한 통제가 가능할 것
	2) 시각화시스템(Visual System): 주변 환경의 모양·크기 등에 있어 실제상황과 유사한 판단자료를 선박조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현실감 있는 육상 및 해상 환경 재현이 가능할 것
	3) 선교시스템(Bridge System): 실제 선박과 같은 조종장치(Console Panel)로 구성된 실물모형의 선교(Mock-up Bridge)를 갖출 것
	4) 수행결과분석시스템(Debriefing System): 시뮬레이션의 수행과정과 수행 결과 분석이 가능할 것
	5) 해상교통조사장비: 전자해도를 기반으로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및 레이더를 이용한 해상교통 흐름 및 교통량 분석이 가능하고, 통항선박의 일별, 시간대별, 선박 종류별 및 선박 규모별 항적도 제시 및 교통특성 분석이 가능할 것
비고: 위 장비의 기준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안전관리체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37조 관련)

1. 법 제46조제2항제1호·제2호(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만 해당한다)·제3호에 따른 선박 및 영 제17조제3호에 따른 선박

구분	내용
가. 해상에서의 안전과 환경 보호에 관한 기본방침	1)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관리목표가 수립되어야 한다. 가) 선박의 안전운항 및 안전한 작업환경의 제공 나) 식별된 모든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의 수립 다)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비상대책을 포함하여 육상 직원 및 해상종사원의 지속적인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2) 1)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침을 수립하고, 육상직원 및 해상종사원이 이를 이행·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나. 선박소유자의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	1)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육상직원 및 해상종사원의 책임·권한 및 상호관계를 규정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2)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원 및 육상지원을 적절하게 제공해야 한다.
다.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권한 및 임무에 관한 사항	1)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별표 12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고 별표 13에서 정하는 교육을 받은 육상직원으로서 최고경영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2)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를 지휘하고, 선박의 안전운항 및 오염방지활동을 감시하며, 필요한 자원과 육상지원이 적절하게 제공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 안전관리자는 2)에서 규정한 임무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한다.
라. 선장의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	1)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선장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가) 안전관리목표 및 방침의 시행 나) 해상종사원이 안전관리체제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동기의 부여

	다) 간단명료한 지시 및 지침의 통보 라) 안전관리체제의 준수 여부 확인 마) 안전관리체제의 검토 및 그에 대한 결함사항의 안전 관리책임자에게의 보고 2)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선장의 최우선적인 결정권한과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 가) 선박의 안전 및 오염방지를 위한 대응조치 나) 필요시 회사에 대한 지원요청
마. 인력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선장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가) 해상종사원을 지휘할 수 있는 적절한 자격 보유 나) 회사의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숙지 다) 선장의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의 제공 2) 회사는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가) 관련 국제협약 및 국내법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고 해당 자격증서를 가진 건강한 해상종사원의 승선 나) 모든 측면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해상종사원의 승선 3) 신규채용되거나 임무가 변경된 종사원이 안전관리체제와 관련하여 해당 업무에 익숙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모든 해상종사원에 대하여 해당 선박의 출항 전에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지침을 문서화하여 제공해야 한다. 4)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종사원들이 관련 법령·규칙·규약 및 지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5) 안전관리체제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훈련절차를 수립·유지하고, 관련된 종사원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해상종사원들이 사용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하고, 그들이 임무를 수행할 때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 선상운용(船上運)	1) 선박의 안전과 오염방지에 관한 주요 선상운용계획 및

用)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침을 작성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2) 1)에 따른 업무는 명확히 규정되고 자격이 있는 자에게 부여해야 한다.
사. 선박충돌사고 등 발생 시 비상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선박의 잠재적인 비상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2) 1)에 따른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 및 연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선박과 관련한 위험·사고 및 비상상황에 대하여 선박 및 사업장의 조직이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 사고, 위험상황 및 안전관리체제의 결함에 관한 보고와 분석에 관한 사항	1) 안전관리체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적합사항, 사고 및 위험발생에 대하여 보고하고, 조사·분석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2) 1)에 따른 조사·분석의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자. 선박의 정비에 관한 사항	1) 선박이 관련 법령 및 자체수립한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2) 1)에 따른 절차 수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주기적인 검사 나) 가)의 검사에 관한 모든 부적합사항(추정되는 원인을 포함한다)의 보고 및 시정조치 다) 가) 및 나)의 활동에 대한 기록유지 3) 갑자기 작동이 정지될 경우를 대비하여 선박의 안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설비 및 기능을 식별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4) 3)에 따른 절차 수립에는 설비 및 기술적 체계를 향상시키는 방법과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예비설비 및 기술적 체계에 대한 정기적인 시험이 포함되어야 한다. 5) 2)가)에 따른 주기적인 검사 및 4)에 따른 설비 및 기술적 체계의 향상방법은 선박의 일상적인 운항정비에 포함해야 한다.
차.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지침서 등 문서 및 자료 관리	1)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모든 문서 및 자료를 관리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2) 문서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시행해야 한다.

에 관한 사항	가) 모든 관련 부서에서는 안전관리체제와 관련하여 효 력이 있는 문서만을 사용할 것 나) 문서의 개정은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검토·승인할 것 다) 무효화된 문서는 신속히 폐기할 것 3) 문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해당 선박과 관련되는 모든 문서를 선내에 갖추어 두어야 한 다.
카.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확인·검토 및 평 가에 관한 사항	1) 안전 및 오염방지활동이 안전관리체제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인증심사 시행 전에 내부심사 를 시행해야 한다. 2) 회사는 안전관리체제와 관련하여 회사의 업무를 위임 받은 종사자 등이 이 표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책임을 이 행하는지를 주기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3) 1)의 내부심사를 시행한 후 안전관리체제의 효율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 및 검토를 해야 한다. 4) 내부심사와 시정조치는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시행해 야 한다. 5) 내부심사를 실시하는 자는 사업장의 규모 및 특성상 부 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를 받는 부서와 독립된 자여야 한다. 6) 내부심사 결과 및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효율성 검토 결 과는 관련 부서의 책임 있는 모든 종사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7) 내부심사 시 발견된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 는 그 사항을 적절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2.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선박(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만 해당한다)
및 영 제17조제1호·제2호에 따른 선박

구분	내용
가. 해상에서의 안전 과 환경 보호에 관 한 기본방침	1) 선박의 안전운항 및 안전한 작업환경의 제공을 포함하 는 안전관리목표가 수립되어야 한다. 2) 1)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침

	을 수립하고, 육상직원 및 해상종사원이 이를 이행·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나. 선박소유자의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	1)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육상직원 및 해상종사원의 책임·권한 및 상호관계를 규정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2)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원 및 육상지원을 적절하게 제공해야 한다.
다.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권한 및 임무에 관한 사항	1)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별표 12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고 별표 13에서 정하는 교육을 받은 육상직원으로서 최고경영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2)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를 지휘하고, 선박의 안전운항 및 오염방지활동을 감시하며, 필요한 자원과 육상지원이 적절하게 제공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 안전관리자는 2)에서 규정한 임무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한다.
라. 선장의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	1) 안전관리목표 및 방침의 시행에 대하여 선장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2)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선장의 최우선적인 결정권한과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 가) 선박의 안전 및 오염방지를 위한 대응조치 나) 필요시 회사에 대한 지원요청
마. 인력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선장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가) 해상종사원을 지휘할 수 있는 적절한 자격보유 나) 회사의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숙지 2) 회사는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가) 관련 국내법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고 해당 자격증서를 가진 건강한 해상종사원의 승선 나) 모든 측면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해상종사원의 승선 3) 안전관리체제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훈련절차를 수립·유지하고 관련된 종사원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 선상운용계획의 수	1) 선박의 안전과 오염방지에 관한 주요 선상운용계획 및

립에 관한 사항	지침을 작성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2) 1)에 따른 업무는 명확히 규정되고 자격이 있는 자에게 부여해야 한다. 3) 해상기상상태별 자체운항통제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4) 자체운항통제기준에는 운항 중 기상악화 시의 피항 등의 대응계획 및 절차와 기상특보 시 운항 및 입출항을 통제하기 위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 선박충돌사고 등 발생 시 비상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선박의 잠재적인 비상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2) 1)에 따른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 및 연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 사고, 위험상황 및 안전관리체제의 결함에 관한 보고와 분석에 관한 사항	1) 안전관리체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적합사항(사업장만 해당한다), 사고 및 위험발생에 대하여 보고하고, 조사·분석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2) 1)에 따른 조사·분석의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자. 선박의 정비에 관한 사항	1) 선박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2) 1)에 따른 절차 수립에는 주기적인 검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3) 갑자기 작동이 정지될 경우를 대비하여 선박의 안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설비 및 기능을 식별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차.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지침서 등 문서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1)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모든 문서 및 자료를 관리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2) 무효화된 문서는 신속히 폐기해야 한다. 3) 문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해당 선박과 관련되는 모든 문서를 선내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카.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확인·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 안전 및 오염방지활동이 안전관리체제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인증심사 시행 전에 사업장에 대한 내부심사를 시행해야 한다. 2) 회사는 안전관리체제와 관련하여 회사의 업무를 위임

	받은 종사자 등이 이 표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책임을 이행하는지를 주기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3)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매월 선박을 방문하여 선박의 안전 및 오염방지 활동이 안전관리체제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4) 내부심사와 시정조치는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비고 1. 영 제17조제2호에 따른 선박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만을 적용한다. 가. 나목1) 및 2): 바목3) 및 4)에 따른 자체운항통제기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육상직원 및 해상종사원의 책임과 권한 관계의 규정, 문서화 및 육상지원의 제공 나. 라목1) 및 같은 목 2)가): 바목3) 및 4)에 따른 자체운항통제기준의 시행을 위한 선장의 안전관리 목표 및 방침의 시행과 이를 위한 선장의 최우선적인 결정권한 및 책임 다. 마목1)나): 바목3) 및 4)에 따른 자체운항통제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선장의 권한과 책임을 보장한 회사규정의 숙지 라. 바목3) 및 4): 자체운항통제기준 마. 사목1): 기상악화 시 자체 입출항통제 또는 운항 중 피항 등에 대한 비상대응절차의 수립 바. 카목3):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선박 방문 및 확인 2. 영 제17조제2호에 따른 선박 외의 선박(추진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선박에 결함하여 운항하는 압항부선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 마목1)나)에 관한 사항 나. 바목3) 및 4)에 관한 사항	

3. 법 제4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면비행선박

구분		내용
가. 해상에 서의 안전 및 환경보 호에 관한 기본방침	운항선 · 시운전선	1)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관리목표가 수립되어야 한다. 가) 선박의 안전운항 및 안전한 작업환경의 제공 나) 식별된 모든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의 수립 다)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비상대책을 포함하여

		육상직원 및 해상종사원의 지속적인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라) 안전과 관련된 준해양사고 등의 보고를 장려하는 방침 마) 안전문화 2) 1)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침과 안전성과지표를 수립하고, 육상직원 및 해상종사원이 이를 이행·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나. 선박소유자의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	운항선·시운전선	1) 안전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고 지원하는 안전관리전담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2)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육상직원 및 해상종사원의 책임·권한 및 상호관계를 규정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3)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원 및 육상지원을 적절하게 제공해야 한다.
다.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권한 및 임무에 관한 사항	운항선·시운전선	1)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별표 1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육상직원으로서 최고경영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2)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를 지휘하고, 선박의 안전운항 및 오염방지활동을 감시하며, 필요한 자원과 육상지원이 적절하게 제공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 안전관리자는 2)에서 규정한 임무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한다.
라. 선장의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	운항선	1)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선장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가) 안전관리 목표 및 방침의 시행 나) 해상종사원이 안전관리체제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동기의 부여 다) 간단명료한 지시 및 지침의 통보 라) 안전관리체제의 준수 여부 확인 마) 안전관리체제의 검토 및 그에 대한 결함사항의 안전관리책임자에게의 보고

		2)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선장의 최우선적인 결정권한과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 가) 선박의 안전 및 오염방지를 위한 대응조치 나) 필요시 회사에 대한 지원요청
	시운전선	1)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선장의 최우선적인 결정권한과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 가) 선박의 안전 및 오염방지를 위한 대응조치 나) 필요시 회사에 대한 지원요청
마. 인력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운항선 · 시운전선	1) 선장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가) 해상종사원을 지휘할 수 있는 적절한 자격보유 나) 회사의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숙지 다) 선장의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의 제공 2) 회사는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가) 관련 국제협약 및 국내법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고 해당 자격증서를 가진 건강한 해상종사원의 승선 나) 모든 측면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해상종사원의 승선 3) 신규채용되거나 임무가 변경된 종사원이 안전관리체제와 관련하여 해당 업무에 익숙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모든 해상종사원에 대하여 해당 선박의 출항 전에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지침을 문서화하여 제공해야 한다. 4)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종사원들이 관련 법령 · 규칙 · 규약 및 지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5) 안전관리체제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훈련절차를 수립 · 유지하고 관련된 종사원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해상종사원들이 사용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하고, 그들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종사원들 간에 의사소통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절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안전관리업무와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협의·조정 및 심의·결정 등을 위한 안전위원회의 구성 나) 안전관리체제 운용 목적의 이해, 중요 안전정보의 전달, 제도의 신설·변경 등 협의를 위한 의사소통체제
바. 선상운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운항선	1) 선박의 안전과 오염방지에 관한 주요 선상운용계획 및 지침을 작성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선상운용계획 및 지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운항관리일반 나) 기상 다) 선원의 휴식 및 건강상태 관리 라) 수면효과 고도 한계, 임시 상승 고도 한계 및 임시 상승 고도에서 체공시간(滯空時間)의 한계 등을 포함한 운항안전에 관한 사항 마) 보안 바) 위험물 사) 통신 및 보고 아) 탑재관리 자) 여객관리 2) 1)에 따른 업무는 명확히 규정되고 자격이 있는 자에게 부여해야 한다. 3) 해상기상상태별 자체운항통제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4) 자체운항통제기준에는 운항 중 기상악화 시의 피항 등의 대응계획 및 절차와 기상특보 시 운항 및 입출항을 통제하기 위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여객을 운송하는 선박의 경우 출항 전 여객의 안전 및 비상시 행동요령 등 여객 친숙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시운전선	1) 선박의 안전과 오염방지에 관한 주요 시운전계획 및 지침을 작성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시운전계획 및 지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시운전 해역 나) 시운전 항해계획 다) 시운전 업무 라) 시운전 단계별 안전 확인 및 보고 사항 마) 시운전 제한 및 중단 사항 2) 1)에 따른 업무는 명확히 규정되고 자격이 있는 자에게 부여해야 한다. 3) 시운전 전 대상 선박에 대해 자체적으로 감항성을 증명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하며, 그 절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해당 선박이 기술자료에 합치하는지 여부 나) 선박 중량의 한계 다) 탑재 및 분배 한계 라) 무게 및 양력(揚力) 중심 한계 마) 속도의 한계 바) 수면효과 고도 한계 사) 선박 분류에 따른 임시 상승 고도 한계 아) 임시 상승 고도에서 체공시간의 한계 자) 운전 및 기기 사용의 제한 차) 인적 및 물적 자원의 보장 4) 수면비행선박의 안전한 시운전 실행을 위하여 통신 및 보고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5) 해상기상상태별 자체운항통제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6) 자체운항통제기준에는 운항 중 기상악화 시의 피항 등의 대응계획 및 절차와 기상특보 시 운항 및 입출항을 통제하기 위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 선박충돌사고 등 발생 시 비상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운항선	1) 선박의 잠재적인 비상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대응절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비상상황 발생 시 업무수행을 위한 비상 운영체제 나) 비상상황을 총괄하는 책임자 지정 및 책임자 업무범위 다)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활동

	2) 1)에 따른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 및 연습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3) 비상상황의 식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충돌 나) 퇴선 다) 오염 라) 좌초 마) 화재 및 폭발 바) 안정성 상실 사) 조종통제 불능 아) 구조결함 발생 자) 운항 중 결함 발생 차) 여객 및 해상종사원의 안전 위해 발생 4) 선박과 관련한 위험·사고 및 비상상황에 대하여 선박 및 사업장의 조직이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조치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시운전선	1) 시운전 선박의 잠재적 비상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비상상황의 식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충돌 나) 퇴선 다) 오염 라) 좌초 마) 화재 및 폭발 바) 안정성 상실 사) 조종통제 불능 아) 구조결함 발생 자) 운항 중 결함 발생 차) 해상종사원의 안전 위해 발생 2) 1)에 따른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 및 연습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3) 선박과 관련한 위험·사고 및 비상상황에 대하여 선박 및 사업장의 조직이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조치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아. 사고, 위험상황 및 안전 관리 체제의 결함에 관한 보고와 분석에 관한 사항	운항선 · 시운전선	1) 안전관리체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적합사항, 사고, 준해양사고 및 위험발생에 대하여 자체 안전보고절차를 수립 및 운영해야 하며, 절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항해안전정보의 수집, 분석, 활용을 위한 자체 자율보고 나) 자체 안전보고절차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에 대한 조사, 자료화, 분석 및 피드백 등 정보 처리절차 2) 선박, 인원 및 환경에 대하여 식별된 모든 위험성에 대한 평가 및 위험성 감소대책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3) 1)에 따른 자체 안전보고 결과를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시정조치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자. 선박의 정비에 관한 사항	운항선	1) 선박이 관련 법령 및 자체수립한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 ·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2) 1)에 따른 절차 수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주기적인 검사 나) 가)의 검사에 관한 모든 부적합사항(추정원인을 포함한다)의 보고 및 시정조치 다) 가) 및 나)의 활동에 대한 기록 유지 3) 갑자기 작동이 정지될 경우를 대비하여 선박의 안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설비 및 기능을 식별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4) 3)에 따른 절차 수립에는 설비 및 기술적 체계를 향상시키는 방법과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예비설비 및 기술적 체계에 대한 정기적인 시험이 포함되어야 한다. 5) 2) 가)에 따른 주기적인 검사 및 4)에 따른 설비 및 기술적 체계의 향상방법은 선박의 일상적인 운항정비에 포함해야 한다. 6) 선박 검사 및 정비를 위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

		는 자로 구성된 검사·정비조직을 갖춰야 한다.
	시운전선	시운전 실행 전 선박의 선체 및 기기들의 안전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차.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지침서 등 문서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운항선	1)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모든 문서 및 자료를 관리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2) 문서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시행해야 한다. 가) 모든 관련 부서에서는 안전관리체제와 관련하여 효력이 있는 문서만을 사용할 것 나) 문서의 개정은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검토·승인할 것 다) 무효화된 문서는 신속히 폐기할 것 3) 문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선박에서 필수 보유해야 할 문서를 목록화하고 선내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시운전선	시운전 안전관리체제 활동은 기록되어야 하며, 기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력의 배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2) 선상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 3) 비상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사고, 위험상황 및 안전관리체제의 결함에 관한 보고와 분석에 관한 사항 5) 선박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확인·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카.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확인·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운항선	1) 안전 및 오염방지활동이 안전관리체제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인증심사 시행 전에 내부심사를 시행해야 한다. 2) 회사는 안전관리체제와 관련하여 회사의 업무를 위임받은 종사자 등이 이 표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책임을 이행하는지를 주기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3) 1)의 내부심사를 시행한 후 안전관리체제의 효율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 및 검토를 해야 한다. 4) 내부심사와 시정조치는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5) 내부심사를 실시하는 자는 사업장의 규모 및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를 받는 부서와 독립된 자여야 한다. 6) 내부심사 결과 및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효율성 검토 결과는 관련 부서의 책임 있는 모든 종사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7) 내부심사 시 발견된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는 그 사항을 적절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8) 안전관리체제 활동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및 측정 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절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자료수집, 보고, 분석, 평가 및 피드백의 절차 나) 안전관리체제 활동 저해 요인에 대한 주기적인 원인 분석 및 대책마련 절차 9) 운항해역, 운전절차, 장비 및 시스템 등의 변경 시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한 변경관리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비고	시운전선 1) 계획된 시운전 완료 후 시운전 안전관리체제 이행 기록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2) 시운전 해역, 시운전 절차, 장비 및 시스템 등의 변경 시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한 변경관리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비고 1. 위 표에서 “운항선”이란 제2호에 따른 시운전선 외의 수면비행선박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시운전선”이란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할 때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에 합격하기 전에 시운전을 하는 수면비행선박을 말한다.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제39조제1항 관련)

1. 교육시기

구분	신규교육	정기교육
교육시기	선임되기 전	3년마다

비고

1. 신규교육은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정기교육은 종전에 받은 신규 또는 정기교육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받아야 하며, 정기교육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3. 종전에 받은 신규 또는 정기교육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정기교육을 받은 경우, 정기교육의 유효기간은 종전에 받은 신규 또는 정기교육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4. 종전에 받은 신규 또는 정기교육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이 되는 날 전에 정기교육을 받은 경우, 정기교육의 유효기간은 해당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5.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자가 신규 또는 정기교육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정기교육을 받은 경우, 정기교육의 유효기간은 종전에 받은 신규 또는 정기교육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2. 교육내용

구분	외항선의 사업장 소속	내항선의 사업장 소속
교육내용	1. 안전관리체제 수립·운영 관련 국제협약 및 국내법령 2. 조사, 질문, 평가 등 심사기법 및 안전경영의 기술 3.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내부심사의 이론 및 기법 4. 해운·선박운항의 지식 및 육상·해상 직원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5. 해양사고 및 중대재해 관리	1. 안전관리체제 수립·운영 관련 국내법령 2. 조사, 질문, 평가 등 심사기법 및 안전경영의 기술 3.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내부심사의 이론 및 기법 4. 해운·선박운항의 지식 및 육상·해상 직원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5. 해양사고 및 중대재해 관리

비고

내항선의 사업장 소속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가 외항선의 사업장 소속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교육시간

구분		외항선의 사업장 소속	내항선의 사업장 소속
교육 시간	안전관리 책임자	16시간 이상	14시간 이상
	안전 관리자	14시간 이상	12시간 이상

비고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4. 교육 시간의 면제

가.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종전에 받은 신규 또는 정기 교육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제2호의 교육 내용과 상응하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교육을 받은 시간만큼 교육시간을 줄일 수 있다.

안전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 선임
[] 변경선임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일
------	------	---------

신고인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대상 구분	[] 외항선의 사업장 소속	[] 내항선의 사업장 소속
	[] 안전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선임자에 관한 내용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번호		
	성명		생년월일
	[] 선임 [] 변경선임	년 월 일	사유(변경선임의 경우)

직무 범위	관리선박		
	선박소유자		
	기타		

근무경력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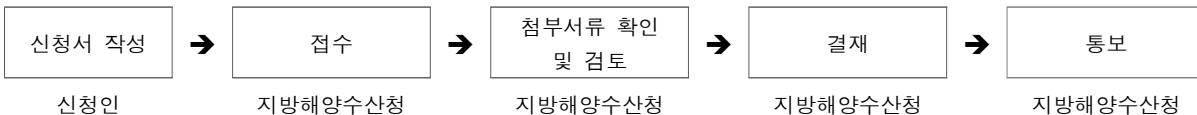
「해상교통안전법」 제4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 선임 [] 변경선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사본 2. 근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3. 「해상교통안전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선박안전관리증서 SAFETY MANAGEMENT CERTIFICATE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선박의 제원(Particulars of ship)	
선명(Name of ship) :	_____
선박번호(Distinctive number) :	_____
선적항(Port of registry) :	_____
선박의 종류(Type of ship) :	_____
총톤수(Gross tonnage) :	_____
IMO 번호(IMO number) :	_____
안전관리회사명(Name of company) :	_____
안전관리회사 주소(Address of company) :	_____
안전관리회사 식별번호(Company Identification Number) :	_____

이 증서는 위 선박의 안전관리체제가 「해상교통안전법」 제4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심사되었고, 그 요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며, 선박회사의 안전관리적합증서가 이 선박의 종류에 해당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Safety Management System(SMS) of the ship has been audited and that it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International Management Code for the Safe Operation of Ships and for Pollution Prevention(ISM Code), following verification that the Document of Compliance(DOC) for the Company is applicable to this type of the ship.

유효기간: 년 월 일까지

This Safety Management Certificate is valid until _____, subject to periodical verification and the Document of Compliance remaining valid.

「해상교통안전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s amend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Korea.

이 증서의 발행근거가 된 심사 일자:

Completion date of the audit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_____

년 월 일 _____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on the date of

인증심사원: _____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f the duly authorized official issuing the certificate)

지방해양수산청장(정부대행기관의 장)
Director General of ()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직인

중간인증심사의 확인
Endorsement for Intermediate Verification AND
Additional Verification(If required)

이 증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그 요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the periodical verification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6.1 of Chapter IX of the Convention and paragraph 13.8 of the ISM Code,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ISM Code.

중간인증 심사
(Intermediate Verification)

장소(place): _____

날짜(date): _____

인증심사원: _____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f authorized official)

지방해양수산청장(정부대행기관의 장)
Director General of ()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직인

중간인증 심사
(Additional Verification)

장소(place): _____

날짜(date): _____

인증심사원: _____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f authorized official)

지방해양수산청장(정부대행기관의 장)
Director General of ()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직인

중간인증 심사
(Additional Verification)

장소(place): _____

날짜(date): _____

인증심사원: _____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f authorized official)

지방해양수산청장(정부대행기관의 장)
Director General of ()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직인

중간인증 심사
(Additional Verification)

장소(place): _____

날짜(date): _____

인증심사원: _____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f authorized official)

지방해양수산청장(정부대행기관의 장)
Director General of ()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직인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안전관리적합증서 DOCUMENT OF COMPLIANCE

대 한 민 국
REPUBLIC OF KOREA

안전관리회사의 명칭 및 주소:

(Name and address of the Company)

안전관리회사 식별번호:

(Company Identification Number)

이 증서는 위 선박회사의 안전관리체제가 「해상교통안전법」 제4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심사되었고, 그 요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며, 해당 선박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Safety Management System(SMS) of the Company has been audited and that it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International Management Code for the Safe Operation of Ships and for Pollution Prevention(ISM Code) for the types of Ships listed below :

선박의 종류(Type of Ship):

유효기간: 년 월 일까지

This Document of Compliance is valid until _____, subject to periodical verification.

「해상교통안전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s amend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Korea.

이 증서의 발행근거가 된 심사 일자:

Completion date of the audit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 _____

년 월 일 _____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on the date of

인증심사원: _____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f the duly authorized official issuing the certificate)

지방해양수산청장(정부대행기관의 장)
Director General of ()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직인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뒤쪽)

중간인증심사의 확인

Endorsement for Annual Verification

이 증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그 요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the periodical verification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6.1 of Chapter IX of the Convention and paragraph 13.4 of the ISM Code,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ISM Code.

제1차 중간인증심사
(1st Annual Verification)

장소(place): _____

날짜(date): _____

인증심사원: _____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f authorized official)

지방해양수산청장(정부대행기관의 장)
Director General of ()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직인

제2차 중간인증심사
(2nd Annual Verification)

장소(place): _____

날짜(date): _____

인증심사원: _____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f authorized official)

지방해양수산청장(정부대행기관의 장)
Director General of ()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직인

제3차 중간인증심사
(3rd Annual Verification)

장소(place): _____

날짜(date): _____

인증심사원: _____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f authorized official)

지방해양수산청장(정부대행기관의 장)
Director General of ()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직인

제4차 중간인증심사
(4th Annual Verification)

장소(place): _____

날짜(date): _____

인증심사원: _____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f authorized official)

지방해양수산청장(정부대행기관의 장)
Director General of ()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갱신인증심사 및 중간인증 심사의 시행시기) ① (생 략)	제42조(갱신인증심사 및 중간인증 심사의 시행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 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시기를 말한다.	②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선박: 선박안전관리증서의 유효 기간 시작일부터 2년 6개월 이 되는 날의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다만, 선박소유자가 요 청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시작 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 후 각각 3개월 이내에 <u>갱신인 증심사</u> 를 받을 수 있다.	2. ----- ----- ----- ---. ----- ----- ----- ----- <u>중간인 증심사</u> -----.